소비자 안전정보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안전정보]

이 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았을까?
어떤 경우에 리콜이 진행되는걸까?
제품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콘텐츠에서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사전제도(안전관리) 및 사후제도[리콜(Recall), 위해정보, 제조물책임]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소비자 안전정보 1
1. 소비자 안전정보 4
1.1. 소비자 안전정보 알아보기 4
1.1.1. 소비자의 권리, 책무 및 보호 4
2. 사전 제도(안전관리) 6
2.1. 제품안전관리제도 6
2.1.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6
2.1.2. 어린이제품 및 놀이시설 7
2.1.3. 식품, 승강기 및 자동차 9
3. 사후 제도[리콜(Recall), 위해정보, 제조물책임] 13
3.1. 리콜(Recall) 제도 13
3.1.1. 리콜(Recall)의 개념, 유형 및 절차 13
3.1.2. 품목별 리콜요건 17
3.2. 위해정보의 수집 등 26
3.2.1. 위해정보의 개념 및 수집·처리 26
3.3. 제조물 책임 28
3.3.1. 제조물 책임의 개념 및 요건 등 28

1. 소비자 안전정보

1.1. 소비자 안전정보 알아보기

1.1.1. 소비자의 권리, 책무 및 보호

소비자에게는 소비자로서 누릴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념

▪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 포함. 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 포함)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제공된 물품 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 등을 원재료(중간재 포함),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
- 제공된 물품 등을 농업(축산업 포함) 및 어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

소비자의 기본권리

▪ 소비자는 다음의 기본적 권리를 가집니다(「소비자기본법」 제4조).

- 물품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해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활동할 수 있는 권리
-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소비자의 책무

▪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조제1항).

▪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조제2항).

▪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조제3항).

소비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3조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 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물품 등의 거래조건·거래방법·품질·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3조제2항).

취약계층의 보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및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말함)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45조제1항).

▪ 사업자는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및 결혼이민자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물품 등을 판매·광고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취약계층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45조제2항).

시정요청 등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46조제1항).

-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조치
-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
  - √ 「소비자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거·파기 등의 권고
  - √ 「소비자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거·파기 등의 명령
  - √ 「소비자기본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
- 그 밖에 물품 등에 대한 위해방지대책의 강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보호 사례

의류 건조기 직접 먼지 청소할 필요 없이 자동 세척 된다더니…
"번거롭게 직접(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건조 시마다 자동 세척"등으로 의류 건조기 광고를 하였으나 실제 사용을 하니 콘덴서 자동 세척기능이 미흡하여 콘덴서에 먼지 쌓임 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서 소비자들이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뉴스 > 공정위소식 > 보도(2021.4.)]

2. 사전 제도(안전관리)

2.1. 제품안전관리제도

2.1.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전기청소기, 압력솥 등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인증

▪ “안전인증”이란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자를 포함)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해 모델(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함)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안전인증대상제품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전선, 전기다리미 및 일반조명기구 등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은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말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나목).

> ※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은 가스라이터,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등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식기세척기, 건전지 등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안전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확인

▪ ”안전확인“이란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

안전확인대상제품

▪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은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된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전력변환장치 및 리튬이차전지시스템과 같은

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은 1천5백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1호가목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 ※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은 전기온수매트,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등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은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으로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것을 말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1호나목).

>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은 건전지(충전지 제외), 전동보드 및 헬스기구 등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 ※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제도 및 안전확인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관리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2. 어린이제품 및 놀이시설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등의 어린이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인증

▪ "안전인증"이란 제품검사(어린이제품을 시험·검사하는 것. 이하 "제품검사"라 함)와 공장심사(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하는 것)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8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을 말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

>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등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안전인증의 표시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며, 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함)를 해야 하며, 안전인증표시는 도형 또는 기호를 이용하여 어린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표시 기준과 방법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 사업자는 안전인증표시와 별도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9조제5항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완구, 유모차 등의 어린이제품은 안전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확인

▪ “안전확인”이란 제품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0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을 말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1호).

>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완구, 유모차 등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안전확인의 표시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안전확인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며, 이하 “안전확인표시”라 함)를 해야 하며, 안전확인표시는 도형 또는 기호를 이용하여 어린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표시 기준과 방법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 사업자는 안전확인표시와 별도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3조제5항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위한 다양한 검사제도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제도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제도, 정기시설검사제도, 유지관리제도 등의 품질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이하 “관리주체”라 함)에게 인도하기 전에 해당 어린이놀이기구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했는지 여부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제6호, 제11조 및 제12조제1항).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의2 및 제12조제2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분야의 안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어린이 생활안전』 콘텐츠의 <놀이안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수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정보 및 학습자료 등은 <한국소비자원 어린이안전넷>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3. 식품, 승강기 및 자동차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식품안전제도가 있습니다.

식품관련 안전제도

▪ 소비자가 먹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품 등의 기준·규격 관리제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제도,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제도, 식품 등 표시제도, 식품영양 표시제도, 원산지 표시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식품 등의 기준·규격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6조 본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제도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식품별로 정해서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8조).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해서 해당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식품을 추적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2조제13호).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평가 및 표시제도	①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또는 ②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한정합니다(「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
식품 등의 표시제도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 등”이라 함)에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과 그 밖에 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참고).
식품 영양표시제도	식품 등(기구 및 용기·포장은 제외)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양표시를 하여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그 밖에 식품 분야의 안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가공식품(농축수산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안전한 승강기 사용을 위해 승강기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제도

▪ 승강기 안전을 사전에 확보해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검사 제도, 자체점검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승강기 안전검사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 참고).
승강기 자체점검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 ※ 그 밖에 승강기 분야의 안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건물 안전관리』 콘텐츠의 <승강기 안전-승강기 안전관리-승강기 검사의 종류 및 시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제도 등을 통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제도

▪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의 정기검사제도,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 등의 품질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정기검사제도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성 유지를 위해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검사기준에 적합한지와 차대번호 등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자료의 내용과 동일한지 등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2항 전단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장치의 성능유지와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특정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 그 밖에 자동차 분야의 안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자동차 구입·관리』 및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사후 제도[리콜(Recall), 위해정보, 제조물책임]

3.1. 리콜(Recall) 제도

3.1.1. 리콜(Recall)의 개념, 유형 및 절차

소비자에게 발생한 위해를 사전에 보호하고, 사업자에게 사후적 법적 책임을 지우는 제도로 리콜(Recall)제도가 있습니다.

리콜의 개념

▪ “리콜(Recall)”이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 포함. 이하 "물품 등"이라 함)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강제적으로 물품 등의 위해성을 알리고 해당 물품 등을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 금지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소비자보호조치입니다(「소비자기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 참고).

리콜의 유형

▪ 리콜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리콜과 정부의 강제적인 리콜로 구분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 참고).

구분	내용
자발적 리콜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물품 등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48조 참고).
강제적 리콜	정부가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의 수거·파기를 강제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강제적 리콜은 물품 등의 결함과 긴급성의 정도에 따라 ‘리콜권고’와 ‘리콜명령’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 참고).

▸ 현행 법령상 주요 리콜제도

구분	근거법령	리콜요건	주관부처
모든 물품 및 용역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대기환경보전법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결함 확인 검사결과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	식품위생법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식약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식품안전기본법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식약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의약품	약사법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식약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산품	제품안전기본법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시·도지사
먹는물	먹는물관리법	먹는샘물 등의 수질이나 용기와 포장등이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시·도지사

<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리콜제도 소개>

※ 품목별 리콜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사후 제도[리콜(Recall), 위해정보, 제조물책임]-리콜(Recall)제도-품목별 리콜요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콜(Recall)의 유형으로는 자진리콜, 리콜권고, 리콜명령이 있습니다.

자진리콜

▪ 사업자의 시정계획서 제출

▹ 물품 등의 결함을 시정하려는 사업자는 리콜 계획을 기재한 시정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48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6조 참고).

▪ 리콜조치

▹ 리콜조치가 시작되면 소비자는 물품 등의 결함에 대해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48조 참고).

▪ 리콜결과 보고

▹ 사업자는 리콜조치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6조).

※ 리콜절차도

▪ 리콜제도는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품목별로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자진리콜 절차는 유사하며,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리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제품안전정보센터 > 제품리콜 > 리콜제도 소개]

리콜권고

▪ 중앙행정기관의 리콜권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 대해 해당 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49조제1항).

▪ 사업자의 리콜권고 수락여부 통지

▹ 리콜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그 권고의 수락여부를 통지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49조제2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 만일,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리콜권고를 수락하지 않으면 다음의 사항이 신문·방송 등을 통해 공표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49조제4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7조제4항 본문).

√ 사업자의 이름

√ 리콜권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 등의 명칭

√ 리콜권고의 내용과 사업자의 리콜권고 수락거부사유

√ 사업자의 리콜권고 수락거부사유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 그 밖에 리콜권고와 관련된 사항

▪ 리콜절차

▹ 사업자가 리콜권고를 수락한 경우의 절차는 자발적 리콜과 동일합니다.

리콜명령

▪ 중앙행정기관의 리콜명령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물품 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改修)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0조제1항 참고).

▪ 사업자의 시정계획서 제출

▹ 리콜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시정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전단 참고).

▪ 소비자에 대한 리콜계획 통지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등기우편에 의한 방법, 소비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다수의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이나 신문에 광고하는 방법 및 대형마트 등이나 물품 등의 판매·제공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0조제1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제5호).

▪ 리콜조치

▹ 사업자가 리콜조치기간 내에 리콜을 실시하지 않으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리콜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0조제2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7항).

▪ 리콜결과 보고 및 정부의 감독

▹ 리콜명령에 따라 리콜조치를 마친 사업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6항).

▪ 위반 시 제재

▹ 리콜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비자기본법」 제84조제1항제1호).

3.1.2. 품목별 리콜요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등에 결함이 있는 자동차는 리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 관련 리콜요건

▪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함)나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함)한 자(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 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함)에게 리콜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각 호).

▹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것

√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제일 것

▹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에너지소비효율의 과다 표시,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의 과다 표시 및 그 밖에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결함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단서 및 각 호 참고).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2항제1호 및 제78조제1호).

※ 자동차 결함신고 및 리콜대상확인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리콜사례

Q. 리콜(결함시정) 차량인데 이미 수리하여 지급한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제작결함 시정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시정명령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동차의 제작결함 시정이 공표되면 해당 차량의 결함에 대해서 무상수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1년 전까지 동일 부위를 수리한 사실이 있으면 수리비의 환급이 가능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참고).
[출처 :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정보 >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자동차/기계류(2020. 2.)]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리콜요건

▪ 자동차(원동기 및 저공해자동차 포함)를 제작(수입 포함)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함)는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운행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이하 “결함확인검사”라 함)를 받아야 하며, 결함확인검사에서 검사대상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 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리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4항 참고).

▹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검사 판정 전에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하려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4항 단서).

▪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결함에 대해 리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작차에 대한 인증이 취소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제4호 및 제90조제7호).

위해한 식품과 표시·광고를 위반한 식품은 리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해식품 관련 리콜요건

▪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함)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포함)에게 리콜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규정(「식품위생법」 제4조)을 위반한 경우
-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규정(「식품위생법」 제5조)을 위반한 경우
-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규정(「식품위생법」 제6조)을 위반한 경우
-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판매 등 금지규정(「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 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규정(「식품위생법」 제8조)을 위반한 경우
-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기구 및 용기·포장 판매 등 금지규정(「식품위생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 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포장에의 사용 등 금지규정(「식품위생법」 제9조의3)을 위반한 경우
- 표시 기준 위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규정(「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4호).

식품 관련 리콜사례

'순대' 등 제조 위생 불량 관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순대' 등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해당 제조업체를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요청했습니다. 점검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게 육수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제품에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고, 순대 충진실 천장에 맺힌 응결수를 확인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이 위반됐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제품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를 하지 않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출처 : 소비자24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리콜뉴스(2021. 11.)]

건강기능식품 관련 리콜요건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리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 표시기준 위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판매 등 금지규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규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을 위반한 경우

▹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 금지규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을 위반한 경우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8호).

▹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제9호).

건강기능식품 관련 리콜사례

납 기준 초과한 수입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함)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가 수입 및 판매한 눈 영양제에서 납이 기준치(1.0㎎/kg)보다 초과 검출(1.6㎎/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출처 : 소비자24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리콜뉴스(2021. 7.)]

식품 등 표시·광고 위반 리콜요건

▪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거나 식품 등을 판매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 등이 다음을 위반한 사실(식품 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등 표시 및 표시방법 규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규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16조제3항제4호).

▹ 회수 또는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호).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도 리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약품 등의 리콜

▪ 의약품에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제조업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하 "의약품 등"이라 함)의 수입자 및 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리콜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약사법」 제39조제1항 참고).

- 의약품 국가출하승인규정(「약사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판매 등의 금지규정(「약사법」 제61조)을 위반한 경우
- 제조 등 금지규정(「약사법」 제62조)을 위반한 경우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원료의약품의 등록을 한 자, 수입자,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신고 수리의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제조소 폐쇄(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 영업소 폐쇄(의약품 등의 수입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 품목제조 금지나 품목수입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76조제1항제5호).
- 회수 또는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약사법」 제94조제4호의2).

의약품 관련 리콜사례

의료기기 수입업체가 수입하는 의료용 일반클립, 봉합사 등 62개 품목 판매 중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의료기기 제조소가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적합성 인정'을 위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던 중 제출서류 일부를 조작하여 제출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류 조작으로 받은 허가(인증) 및 GMP 적합인정서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행정절차 상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소비자 보호 및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판매중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출처 : 소비자24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리콜뉴스(2020. 8.)]

가공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축산물도 리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축산물 리콜

▪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포함) 또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축산물이 다음에 위반된 사실(축산물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 제외)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여 폐기(회수한 축산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하지 않을 수 있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제1항).

- 기준·가공기준·성분규격에 맞지 않는 축산물의 판매 등 금지규정(「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을 위반한 경우
- 규격에 맞지 않는 용기·기구·포장 또는 검인용·인쇄용 색소 사용 금지규정(「축산물 위생관리법」 제5조)을 위반한 경우
- 판매 등의 금지규정(「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을 위반한 경우

▪ 위반 시 제재

- 회수 또는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제3항제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관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축산물위생감시원”이라 함)에게 축산물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용도,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제1항 참고).

- 기준·가공기준·성분규격에 맞지 않는 축산물의 판매 등 금지규정(「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 및 제7항 참고)을 위반한 경우
- 규격에 맞지 않는 용기·기구·포장 또는 검인용·인쇄용 색소 사용 금지규정(「축산물 위생관리법」 제5조제2항 참고)을 위반한 경우
-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허가규정(「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영업신고규정(「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을 위반한 경우
- 판매 등의 금지규정(「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4호).
- 리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제4항제15호).

안전인증대상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제품 등의 공산품도 리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 리콜권고

▪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이하 “제품”이라 함)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또는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리콜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품안전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10조제1항).

제품 리콜명령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리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제1항).

-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 제품 리콜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확인 등을 한 후 해당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제1항제1호).

액체괴물(슬라임) 리콜사례

Q. 액체괴물(슬라임)에서 방부제, 납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리콜조치가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이미 구매한 제품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A. 사업자는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급 등을 해주어야 합니다(「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제1항).

마트나 문구점 등에서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슬라임 구매 시에는 제조일자를 꼭 확인하여야 하며, 제조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인증번호를 검색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소비자24 > 상담 및 피해/분쟁 > 피해/분쟁 관련사례 > 스토리로 보는 사례(2019. 1.)]

제품 자진리콜

▪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제품을 자진 수거해야 합니다(「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 이를 위반해서 제품의 수거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제1항제2호).

안전인증대상제품 리콜

▪ 시·도지사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에게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리콜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제1항).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함) 또는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에 안전인증표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 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사용한

경우

▪ 위반 시 제재

▹ 리콜명령을 위반한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제9호).

▹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9조제1항제34호).

※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사전 제도(안전 관리)-제품안전관리제도-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제품 리콜

▪ 시·도지사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전기용품에 대한 리콜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제2항).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함)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 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 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 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 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사용한 경우

▪ 위반 시 제재

▹ 리콜명령을 위반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제4호).

▹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9조제1항제34호).

> ※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사전 제도(안전 관리) 제품안전관리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해성이 높은 먹는샘물 등도 리콜 대상입니다.

먹는샘물 등 리콜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 등"이라 함),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압류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1항).

-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먹는샘물 등, 수처리제 또는 정수기의 사용금지 규정(「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3항) 위반
- 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 금지규정(「먹는물관리법」 제40조제1항) 위반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12호 및 제58조제8호).

▪ 영업의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수입·유통판매하는 먹는샘물 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에 해당하는 물건은 압류하거나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2항).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59조제17호).

▪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거나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는 압류 또는 폐기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4항).

▪ 유통 중인 먹는샘물 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이 다음의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수·폐기명령을 받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5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3).

- 먹는샘물 등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 등의 수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
- 먹는샘물 등의 용기에서 「식품위생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에서 정한 용기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12호).

※ 그 밖에 품목별 리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2. 위해정보의 수집 등

3.2.1. 위해정보의 개념 및 수집·처리

소비자의 안전에 우려가 되는 정보를 “위해정보”라고 합니다.

“위해정보”란?

▪ 위해정보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이하 “위해정보”라 함)를 의미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1항 참고).

위해정보의 수집과 처리를 통해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해정보 수집

▪ 소비자안전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안전센터를 두고 있으며,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 **위해정보 제출기관**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병원·학교·소비자단체 등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7항).
- 소비자안전센터는 병원, 소방서 등 전국의 76개 위해정보 제출기관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신고-위해정보소개-위해정보 제출기관 현황 참고]

위해정보 분석 및 결과에 따른 조치

▪ 소비자안전센터가 수집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2항).

1. 위해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2.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 포함. 이하 "물품 등"이라 함)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3. 위해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제도개선 건의
5. 그 밖에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위해정보 분석 및 결과에 따른 조치 사례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 안전주의보 발령
영·유아들이 단추형 전지를 삼키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하며 안전기준 강화에 나섰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연구용역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어린이보호포장과 사용 제품의 안전설계, 주의·경고 표시를 안전기준에 반영하여 의무화 할 예정이며, 한국소비자원은 선제적으로 단추형 전지 및 사용 제품 제조·유통·판매업체 등 관련 업계에 전지의 어린이보호포장과 단자함 안전설계, 주의·경고표시를 강화토록 권고하였고, 업계는 이를 수용하여 자발적인 조치를 진행중입니다.
두 기관은 단추형 전지 안전사고로 인한 해외리콜 사례 및 불법·불량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등과 협력하여 단추형 전지에 대한 소비자 안전의식 개선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단추형 전지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입 시) 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된 단추형 전지를 구입하고, ▲(사용 시) 단추형 전지 사용 제품에 안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테이프 등을 붙여 전지가 이탈되지 않게 관리하며, ▲(보관·폐기 시) 단추형 전지는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폐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 안전이슈 > 보도자료(2021. 9.)]

▪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은 위 3.에 따라 시정 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수락 여부 및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 결과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3항).

- 시정 권고에 따른 이행 내용과 실적
-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못한 물품 등에 대한 조치계획
- 위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원장은 물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위 3.에 따른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요청을 해 줄 것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4항).

▪ 위해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자는 물품 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상품명·피해정도·사건경위에 관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5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5항 단서).

- 원장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해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물품등의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장에게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 위해정보제도 및 위해정보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3. 제조물 책임

3.3.1. 제조물 책임의 개념 및 요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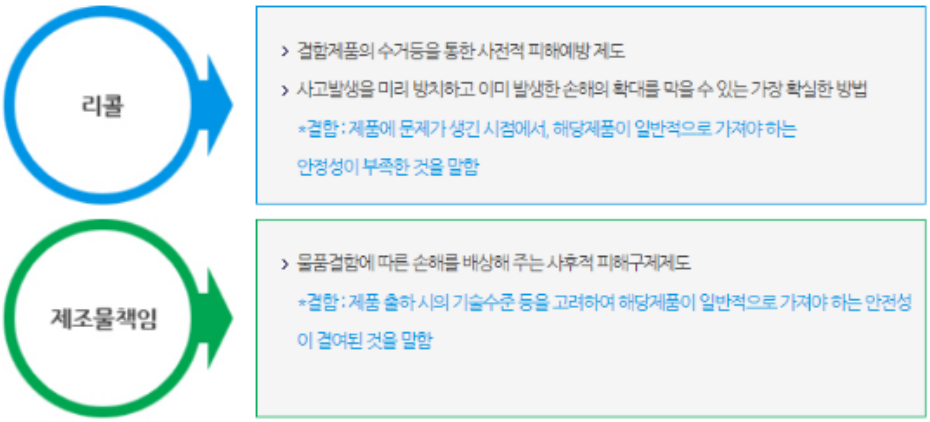
제조물 책임제도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제조물 책임"이란?

▪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 이하 "제조물"이라 함)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그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에 대해 제조업자가 배상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1조 및 제3조제1항).

▪ 리콜제도는 결함 제품의 수거 등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제도인데 반해, 제조물 책임제도는 물품 결함에 따른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해 주는 사후적 피해구제 제도입니다.

구분	리콜제도	제조물책임제도
시점	소비자위해의 사전예방	소비자피해 사후배상
대상물품	결함물품 전체	결함이 발생한 특정제품
절차	수리, 교환, 환급, 수거 등	개별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법	「제품안전기본법」 및 품목별 관련 법규	「제조물 책임법」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 정책 – 제품안전 – 제품안전기본법 – 제품리콜제도 소개>

제조물 책임의 요건

▪ "제조업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3호).

1.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
2.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識別)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위 1.의 사람으로 표시한 사람 또는 위 1.의 사람으로 오인(誤認)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사람

▪ 제조업자에게 제조물 책임이 적용되려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누군가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를 입어야 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1항).

구분	내용
제조물	–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1호).
결함	– 제조물에 다음과 같은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것을 말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2호). • 제조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해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설계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표시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에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
생명·신체·재산상 손해	– 제조업자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 제외)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1항).

※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판례는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표시(지시·경고)상의 결함으로 제조물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표시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17333 판결)

판례는 제조물에 대한 제조상 또는 설계상의 결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제조업자 등이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와 같은 표시상의 결함(지시·경고상의 결함)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이 인정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배상 책임

▪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2항 전단).

배상액 산정

▪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2항 후단).

- 고의성의 정도
-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정도
-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해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

소비자의 입증책임 경감으로 소비자의 권리구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함 등의 추정

▪ 피해자가 다음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위 1.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위 1.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 ※ **제조물책임에 관한 입증책임의 분배**(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
> 판례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판매한 공급자도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판매·대여 등 공급자의 책임

▪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3항 본문).

▹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한 때에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3항 단서).

제조물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기한 안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

▪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7조제1항).

손해배상의 청구기간

▪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7조제2항 본문).

▹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해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7조제2항 단서).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방법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 책임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의 특칙으로서,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 적용 및 손해배상 등은 법원을 통한 민사절차로써 이루어집니다. 즉, 제조물 책임법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전제로 하는 법으로서,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개별 사건에서 제조물의 결함 유무(예컨대, '설계상 결함' 유무) 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과 관련한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출처 : 소비자24 > 상담 및 피해/분쟁 > 소비자민원 사례 >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 및 손해배상 청구 방법]

※ 민사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홀로 민사소송』 콘텐츠의 <민사소송의 이해-"민사소송"이란?-민사소송의 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